고용진 국회의원 초청
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

혁신과 협업,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!

자동차서비스산업
주요 현안과제

2019. 9. 10.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순 서

Ⅰ. 행사 개요 ····· 1

[참고] 위원회 개요 ····· 2

Ⅱ. 주요 건의 ····· 3

❶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····· 4

❷ 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차감지급(꺾기) 관행 개선 ····· 6

❸ 보험사의 대금 지연지급 피해 방지대책 마련 ····· 7

❹ 선(先)손해사정 후(後)정비 의무화 ····· 8

❺ 자기부담금 수납체계 개선 ····· 9

❻ 자동차정비업의 불합리한 작업범위 개선 ····· 10

❼ 정비작업을 위한 자동차번호판 일시분리 허용 ····· 12

Ⅰ. 행사 개요

1 **(일시)** '19. 9. 10(화) 12:00 ~ 13:30

2 **(장소)**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(5F)

3 **(주요 내용)** 자동차서비스산업 주요 현안 건의 및 간담

4 **(세부 일정)**

(사회자 : 소상공인정책부장)

시간		내 용	비 고
12:00~12:05	5'	○ 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회자
12:05~12:10	5'	○ 사진 촬영	참석자 전원
12:10~12:20	10'	○ 인사말씀 - 김동경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 - 고용진 국회의원 -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	
12:20~13:30	70'	○ 업계 현안 건의 및 간담	도시락 제공

참고 「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」 개요

□ 구성목적

○ 자동차정비, 부품판매 서비스 업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정책 개선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

□ 위원회 구성

○ (위원장) 공동위원장 2인*

* 경기자동차정비(조) 김동경 이사장, 한국전문정비(연) 윤육현 회장

○ (위 원) 관련 업종의 정회원 협동조합, 전문가 등 20명 내외

□ 운영방식

○ 분기별 개최 원칙 * 현안발생시 수시 개최 가능

<2019년 위원회 개최 현황>

일자	내 용
6.11.	○ 제1차 위원회 - 위원회 신설 후 운영방향 논의
7.11.	○ 제1차 실무협의회* - 업계 현안 공유 및 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수렴
8.20.	○ 제2차 위원회 - 주요 건의과제(5건) 선정 및 현안 논의

* 자동차정비, 부품유통업 등 관련 업계 실무담당자로 구성

○ 위원회에서 차기 회차 주제 등 사전논의

□ 주요 활동방향

○ 업계 주요 현안 발굴, 현장애로 수집 및 정책 DB화

- 과제별 검토 및 논의, 신규과제 발굴, 전문가 의견수렴

○ 건의반영, 법·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활동

- 위원회 명의로 국회·정부 건의, 토론회 개최, 언론기고 등

Ⅱ. 주 요 건 의

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자동차 수리 시**, 완성차업계에서 공급하는 **OEM부품(순정품)**을 대부분 **사용**하고 있어 **중소 부품산업 활성화에 한계**

- **비싼 부품비**로 인해 수리비 및 보험료 증가로 **소비자 부담도 가중됨**

○ 민간인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**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**를 **도입**('15.1.8.시행)하였으나,

- 국산 완성차업계의 **디자인보호권(20년 간 독점적 권리) 등록** 및 **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** 등으로 동 **제도 시행**에 **애로***

* 디자인보호권 : 수입차의 경우 252건에 불과하나, 국산차 4,868건 보유

** 디자인권 침해시 완성차업계는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라 금지청구(113조), 손해배상청구(115조)가 가능하며, 침해죄(220조)로 부품회사를 형사고발도 가능

*** 인증이 합격된 대체부품 중 출시된 제품은 대부분 엔진오일, 부동액 등의 범용제품

○ 이에 따라, **대체부품**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**디자인권의 효력**을 **제한**하는 **「디자인보호법」 개정안**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, 모두 산자위 **계류 중**임

<개정안 주요내용>

	현 행	민병두 의원안	김현아 의원안	윤관석 의원안	박찬우 의원안
대체부품에 미치는 디자인권 보호기간	**20년**	36개월	60개월	45개월	60개월

* 출처 :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('18.2. 송대호 수석전문위원)

- 디자인 보호를 통해 자동차·부품 디자이너 보호가 법의 기본 취지이지만, 자동차 부품은 **고가**이면서 **장기간 사용**한다는 점에서 **소비자 이익**과 **부품산업 활성화**를 위한 **고려**도 **필요**

- 일반적으로 **자동차 교체주기**는 **20년보다 짧으므로** 현행법상 **대체부품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**

○ 「디자인보호법」 개정의 대안으로서 **국토부, 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간 업무협약**을 체결하여 **완성차업계**가 **대체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**을 하지 **않기로 구두합의**('17. 9) 하였으나, **법적효력이 없어 중소부품업체 참여**는 **저조**

-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**국산차 대체부품**에 대해 **해외수출**을 **금지**하고 있어 좁은 내수시장만으로 **대체부품**을 **제조**할 **중소기업**이 사업을 영위하기는 **어려운 상황**

○ 또한, 자동차 사고 배상시 **대체부품**이 **보험**으로 **적용**되는 **법적 근거가 없어** 보험사는 대부분 **순정품**으로 **배상**하고 있음

-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정비시에도 순정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**자동차보험 손해율***은 **증가**하고, 이는 **자동차보험료 인상**으로 이어져 **소비자 부담 증가**

* 자동차보험 손해율 : 보험료 중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액 비율

□ 건의 사항

○ **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「디자인보호법」 개정**

- 1차 협력업체, 대체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**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 및 승인절차**에 대한 **포괄적인 논의 및 대안마련** 필요

○ **자동차 보험 적용시 대체부품**을 **사용**할 수 있도록 **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** 및 **'자동차보험 약관' 개정**

- **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**에 **대체부품 우선 사용 근거규정 신설**

- **자동차보험 약관**상 **'새 부분품'**에 **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'인증대체부품'**을 **포함**하도록 개정하고, 일정 기간이 경과한 차량 수리시 **'인증대체부품'**을 **우선하여 사용할 것**을 명시

2 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차감 지급(꺾기) 관행 개선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차량 보험수리**에 대한 **부품비용**(부품유통) 및 **공임비**(정비) 지급시 **손해보험사**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**부품 청구액**의 **5%~7%**를 **차감 지급**

- **손해보험사**는 영세한 부품유통업·정비업 사업자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**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**으로 **청구액**을 **감액**
- **대기업 직영업체**에는 **차감 지급**을 **하지 않거나 지역별**로 **할인율**을 **차등 적용***하는 등 손해보험사의 **자의적인 기준 적용**

* 지역별 할인율(부품유통업 기준) : 충남·인천 3~5%, 제주 0%, 기타 지역 5~7%

- **(사례1) 광주 소재 A부품유통업체**는 '18년부터 '19년 6월까지 **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**이 **약 3천 7백만원**에 달함
- **(사례2) 대구 소재 정비업체**(약 33개) 대상 조사결과 **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**이 **약 3억 8천만원**에 달함

○ 부품유통업 매출 중 **보험관련 매출**이 **약 80% 이상**을 차지하나 **손해보험사**의 **차감 지급**으로 **유통마진(약 15~20%)의 1/3 이상**을 **받지 못하고 있음**

- 특히 최근 인건비, 운송비 등 **각종 비용**과 **재고부담**이 **증가**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의 **일방적인 청구액 차감 지급 관행이 지속**되어 **영세한 부품유통업·정비업 사업자**들은 **도산 위기**에 직면

□ 건의 사항

○ 손해보험사의 **일방적인 부품비·공임비 차감 지급 관행 개선**

○ **자동차 서비스업 불공정 행위**를 **관리·감독**하는 **'정부신고센터' 설치**

- 부품 청구액·정비 공임비 등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, 대금지연 등 **자동차 서비스업의 갑-을 관계 문제 개선**을 위한 **정부 채널 마련**

3 보험사의 대금 지연지급 피해 방지대책 마련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차량 보험수리시** 사고 과실 판정 등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**손해보험사**는 **부품대금**(부품유통업체)과 **공임비**(정비업체)를 **송사 종결시까지 지급하지 않음**

- **송사 기간**이 **장기화** 되는 경우 이미 부품구매 및 정비를 완료한 **영세한 중소부품유통업·정비업 사업자**의 **부담 증가**

○ 또한, 대금 지연에 대한 **지연이자 지급 등 피해보상**이 **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** 영세업체의 **경영난 가중**

□ 건의 사항

○ **중소 부품유통업·정비업 사업자**들을 위한 **공적보험 개발**

- 중소 자동차서비스사업자들이 송사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공적보험을 통해 **보험금**을 **先지급**하고 **보험회사**에 **대위권 행사**

* (유사사례) **신용보증기금 '매출채권보험'**

→ 중소기업·중견기업(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)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(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)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,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

4 선(先)손해사정 후(後)정비 의무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차량 보험수리시 정비업체**는 **견적서 발행 후** 보험사의 지불 보증에 따라 **수리 진행**

- **수리 완료 후** 보험사에 **정비요금**(부품가격+정비공임) **청구**

○ 정비요금 청구 후 **보험사**는 **손해사정**을 **실시**하여 **최종 지급액 확정**

- **최종 지급액**은 정비업체의 **청구금액보다 삭감**되어 **지불**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손해사정으로 인해 삭감된 금액에 대한 **구체적 내역**이나 **사유**를 **설명하지 않음**

<現 보험수리 진행절차>

❶	❷	❸	❹	❺
차량입고	▶ **수리범위 협의 후 정비** (정비업-보험사)	▶ **정비요금 청구** (정비업·부품사 →보험사)	▶ **손해사정 및 지불액 확정** (보험사)	▶ **최종 지급** (보험사→ 정비업·부품사)

○ 또한, **보험사**는 정비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**손해사정 결과**를 **제공하지 않음**

□ 건의 사항

○ 정비업체의 견적서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하여 **차량 수리** 前 정비업체에게 **손해사정서**를 **제공**하도록 **의무화**

- **정비업체**는 수리 이전에 **손해사정**에 대해 **이의**를 **제기**하거나 **조정**할 수 있어 **보험사**의 **일방적인 삭감·미지급**으로 인한 **피해 예방**

<(개선안) 보험수리 진행절차>

❶	❷	❸	❹	❺
차량입고	▶ **견적서**(정비업) · **손해사정서**(보험사) **발행**	▶ **수리 결정** (차주)	▶ **수리진행** (정비업)	▶ **최종 지급** (보험사→ 정비업·부품사)

5 자기부담금 수납체계 개선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차량 보험수리시 보험사**는 수리비용 중 **자기부담금**을 **공제**하여 **지급**

- **정비업체**가 **소비자**로부터 **자기부담금**을 **직접 수납**해야하며, 이 과정에서 **불필요한 갈등 발생**

○ **정비업체-보험사-소비자간**의 **거래관계**가 **보험사**의 **편의에 의해 결정**

- **보험수리**가 **정비업체-보험사**의 **거래**라면, **모든 수리비용**을 **보험사**가 정비업체에 **지급**하고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별도의 변제가 이뤄져야 함

- 반면, **보험수리**가 **정비업체-소비자**의 **거래**라면, **모든 수리비용**을 **소비자**가 **정비업체**에 **지급**하고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함

○ 그러나 **보험금 지급**은 **보험사**가 정비업체에 직접하고, **자기부담금**은 **소비자**가 정비업체에 **지급**하도록 함으로써 **정비업체**가 **수리비 정산 과정**의 **모든 부담**을 **떠안게 됨**

□ 건의 사항

○ 보험수리시 **소비자**의 **자기부담금**은 **보험사**가 **직접 수납**하도록 개선

6 자동차정비업의 불합리한 작업범위 개선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자동차정비업**은 ①**자동차종합정비업**, ②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**, ③**자동차전문정비업**, ④**원동기전문정비업**으로 세분('자동차관리법 시행령' 제12조)

- 정비업 종류별 **작업범위**(동법 시행규칙 제131조)

구분	작업범위
자동차종합정비업	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 및 튜닝작업
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	승용자동차·경형 및 소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 및 튜닝작업
자동차전문정비업	별표26*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·장치에 대한 점검·정비 및 튜닝
원동기전문정비업	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

* 원동기, 연료, 조향, 제동, 완충 장치 등의 제한되는 작업범위 열거

- 정비업 종류별 **등록기준**(동법 시행규칙 별표21의 2)

구분	시설기준	시설·장비 등 충족기준*(건)
자동차종합정비업	1,000㎡ 이상	16건
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	400㎡ 이상	16건
자동차전문정비업	50㎡ 이상	9건
원동기전문정비업	300㎡ 이상	14건

* 해당 정비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(기기)

** **자동차종합정비업**과 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**의 경우 **시설기준 외의 요건**은 **동일**하고, 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**은 **자동차전문정비업**의 **모든 기준**을 **포함**하고 있음

○ 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**의 경우 **자동차전문정비업**에 비해 **시설기준**과 **등록기준**이 **더 까다로운 편**이나 **정비범위**는 **더 협소**한 상황으로 형평에 맞지 않음

- 50㎡ **이상**이면 등록할 수 있는 **자동차전문정비업**의 경우 **모든 자동차**(대형버스, 25톤 화물차 등) 정비 **가능**

- 400㎡ **이상**이어야 등록할 수 있는 **소형자동차정비업**의 경우 **10인 이하의 승용차, 소형 승합·화물차만** 정비 **가능**

○ 또한, **동일차종**의 경우에도 **좌석유무**에 따라 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**에서 **정비**가 **불가능**한 상황 발생

> **좌석 없는 카니발**의 경우 **'소형화물'**로 분류되어 **소형정비업**에서 정비가 **가능**하나, **좌석 있는 카니발**의 경우 **'중형승합'**으로 분류되어 정비 **불가**

□ 건의 사항

○ **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작업범위**에 **총중량 6톤 이하**의 **승합 및 화물자동차 까지 정비**할 수 있도록 **개선**

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개정)

* 서울자동차정비(조), 현재 대부분의 소형정비업장에 설치된 제동시험기 등 시설·장비로 총중량 6톤 차량 이하 차량은 안정적으로 정비·검사 가능

7 정비작업을 위한 자동차번호판 일시분리 허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**자동차정비사업자**는 차량정비를 위해 **등록번호판 및 봉인**을 **탈착**해야 하는 경우 **시·도지사의 허가**를 받아야 함

- **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**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되는 **등록번호판 및 봉인**은 **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**와 **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***에만 **탈착 가능**

*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5조의 과태료 체납자 및 「지방세법」 제131조의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등록번호판을 영치 후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

○ **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**를 위해 **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**이 **불가피**하나 **매번 사전허가**를 받아야 하므로 **대기시간**과 **행정기관 방문비용 등 비효율 발생**

○ **긴급 상황 등**으로 **부득이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**을 **진행**한 경우에도 **처벌규정*** **적용**

* (벌칙) 시·도지사의 허가 받지 않고 정비사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 탈·부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

□ 건의 사항

○ **자동차 정비작업**을 위해 **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**으로 **등록번호판 및 봉인**을 **탈착**할 수 있도록 개선

- **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 제2항**에 자동차정비사업자가 **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봉인탈착을 허용**하는 **근거조문 신설**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 ① (생 략)	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**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**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.	② ----------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 ----------.
<신 설>	1.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
<신 설>	2.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
<신 설>	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○ **국토교통부령**으로 **정비사업자**가 **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붙인 현황**을 **정비조합**에 **보고**하도록 하여, 조합에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현황을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**세부 규정 마련**

-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**정비업자**는 그 결과의 **정보(탈거 차량번호 등)**를 **매월 정비조합**에 **제출**하여야 하며,
- **정비조합**은 정비업체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**시·도지사**에게 **보고**토록 세부규정 마련

※ (기대효과) 자동차정비업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정비작업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가 재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